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0415호, 2024. 3. 26. 공포, 2026. 3. 2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(안 제2조)

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의 협의 후 기본계획안을 정하여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고,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

나. 지역계획 수립·시행 등 관련(안 제3조, 제4조)

- 1) 지역계획 수립시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, 법 제20조에 따른 ‘통합지원협의체’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, 제출하도록 함
- 2)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 위반 우려, 지방자치단체 간 현저히 불균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조정 권고가 있거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역계획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정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에 따르도록 함

다.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(안 제5조)

- 1)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 전달체계의 구성 및 인력운영 현황,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
- 2)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
- 3)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「노인복지법」 제5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조의2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,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
라. 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(안 제7조, 제8조)

- 1)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본인,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 및 후견인으로 정하고, 본인 동

의가 있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의 담당자도 통합지원 신청을 대할 수 있도록 함

- 2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신청하거나 직권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조사 등의 과정에서 종합판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하는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, 통합지원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함
- 마. 퇴원 또는 퇴소 통보가 필요한 경우(안 제9조)

의료기관, 장기요양기관 이외에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원·퇴소를 통보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, 통합지원신청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함

- 바.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등 의뢰(안 제10조)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조사 등 업무 의뢰 시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(별지 제2호서식), 조사 등에 필요한 조사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

- 사.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(안 제11조)

- 1)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,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이 통보되는 경우 수립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계획 등을 규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통합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지원계

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

아.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(안 제12조)

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·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, 통합지원 관련기관, 그 밖에 지역 건강·주거·돌봄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회의(“통합지원회의”)를 운영하도록 하고, 서식 등 기타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.

자.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(안 제13조)

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은 통합지원회의에서 심의·결정하고, 전문기관의 조사·판정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결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.

차. 통합지원의 의뢰 및 상태변화 점검 등(안 제14조, 제15조)

- 1)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필요한 서식(별지 제4호서식)을 정하고, 통합지원 의뢰 및 서비스 결정 통보 등을 법 제22조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
- 2)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 점검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하고,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

카. 통합지원의 종료(안 제16조)

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,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

입소하게 된 경우,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, 통합지원 대상자 본인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상당기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함

타.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위탁 등(안 제17조)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

파.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(안 제19조, 제20조)

- 1)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,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수의 단체·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
- 2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,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앙 및 시·도 사회서비스원 그 밖에 공공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, 구체적인 역할 등은 지정서에 명시하여 발급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을 정하여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알리고,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역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립된 지역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전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계획을 법 제20조에 따른 시·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지역계획 시행연도의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제4조(지역계획 조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 지역계획 또는 시·군·구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지역계획의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지역계획의 내용이 통합지원 기본계획, 보건복지분야 정부 시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
3.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
4. 그 밖에 지역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전항에 따른 지역계획 조정 권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권고사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 지역계획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조

정을 권고한 경우, 시·군·구 지역계획이 시·도 지역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지역계획의 내용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·군·구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 권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다.

1.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, 통합지원 협의체 등 전달체계의 구성, 인력 등 운영 현황
2. 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
3. 통합지원 대상자별·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이용 현황
4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(이하 ‘전문기관’이라 한다),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연구기관·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그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「노인복지법」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
 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
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실태조사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계획 추진성과 보고 및 평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 지역계획의 추진 성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 부합성
 2. 지역계획 내용의 충실성
 3. 시행과정의 적정성
 4.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
 5.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
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학·

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지원 신청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4조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(영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) 본인
2.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
3.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후견인

② 전항 제1호에 따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(시설)의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.

1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속한 요양보호사
 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에 속한 장기요양요원
 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
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관
 5.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
 6. 법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
 7.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
 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제8조(긴급 지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신청하거나 직권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제3항의 조사 등의 과정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하는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전항에 따라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에 보고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9조(퇴원 또는 퇴소 통보가 필요한 경우)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‘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
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송부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다.

제10조(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등 의뢰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의 업무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의뢰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)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

“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등의 지원계획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
 2.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이 통보되는 경우 수립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계획
 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전항의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필요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복서비스를 조율하는 등 지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.

제12조(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) ① 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·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, 통합지원 관련기관, 그 밖에 지역 건강, 주거,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전문가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회의(이하 ‘통합지원회의’라 한다)를 운영한다.

② 통합지원회의와 그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통합지원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,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3조(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제12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심의·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개인별지원계획에는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, 제공기관에 관한 사항, 통합지원 제공 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.

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할 경우에도 통합지원회의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⑤ 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(통합지원 의뢰 등) ①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서비스 결정 통보 등은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15조(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 점검)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점검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

하고,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지원의 종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.

1.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
2.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
3.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② 통합지원 대상자 본인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상당기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러한 사실을 통합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통보하고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7조(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위탁 등)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.

제18조(상호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)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,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이 소관 통합지원 업무와 관련한 정보로서 상호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, 주거지, 연락처 및 보호자의 연락처

2. 통합지원 제공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공 현황, 제공기간, 제공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
3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
4.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
5.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결과
6.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
7. 통합지원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
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.

제19조(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기관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

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.

② 그 밖에 법 제24조제2항의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수의 단체·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시·도지사 등으로부터 법 제24조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·기관에서 부담한다.

제20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

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

보험공단

2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
 4.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앙 및 시·도 사회서비스원
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된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
-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‘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-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기관의 역할, 기능,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지정서를 발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비행위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20조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

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도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신청서(의뢰서)

■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

신청서(의뢰서)

	성명	관계 []본인 []배우자 []자녀(손자녀) []8촌이내 친족 []후견인	연락처
신청인	※ 8촌 이내 친족, 후견인이 아닌 경우(전문기관,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신청대행시) : 아래 신청대행란을 작성		
	신청 대행	기관 유형	[]노 인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[]노 인 입소 시설 []장애인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[]장애인 입소 시설 []퇴원 의료기관(병·의원) []국민건강보험공단 []기타 ()
		기관명	주소
		담당자명	담당자 연락처
대상자	성명	성별	[]남성 []여성
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
	주소		
보호자	성명	관계	연락처

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장)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]

[별지 제2호서식] 조사 등 의뢰서

■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

조사 등 의뢰서

의뢰처 (지자체)	소속	의뢰일 년 월 일
	담당자	연락처

의뢰 대상자 목록
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주소

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3항,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발신기관 담당자명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]

[별지 제3호서식] 개인별지원계획서

■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

(2쪽 중 제1쪽)

개인별지원계획서(노인·장애인 용)

계획수립일		년 월 일		담당자	
■ 대상자 기본사항					
성명		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		
실거주지 (주소와 다를 경우)					
연락처		자택		핸드폰	
비상연락처		①성명	관계	연락처	②성명 관계 연락처
가구형태	☐ 독거 ☐ 비독거 (☐ 부부 ☐ 노부모 ☐ 성인자녀 ☐ 조손 ☐ 형제자매 ☐ 장애인 가구 ☐ 한부모 가구 ☐ 다문화 가구 ☐ 친척·지인 ☐ 기타()				
	가구원 수 (명)		가구 내 등록장애인 수 (명)		
사회보장수급권	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(☐ 생계급여 ☐ 의료급여 ☐ 주거급여) ☐ 차상위 ☐ 일반(보훈)				
	☐ 일반가구 ☐ 기초연금 ☐ 장애인연금 ☐ 장애수당 ☐ 장애아동수당 ☐ 기타				
주수발자	☐ 없음 ☐ 배우자 ☐ 부모 ☐ 자녀(며느리, 사위 포함) ☐ 손자녀 ☐ 친인척 ☐ 친구·이웃 ☐ 사적간병인 ☐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(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) ☐ 형제·자매 ☐ 조부모 ☐ 자원봉사자 ☐ 기타				
	주수발자의 장애여부		☐ 예 (장애유형:) ☐ 아니오		
	주수발자의 사회활동 여부		☐ 예 ☐ 아니오		
대상자 유형	65세 이상	장기요양 재가급여자 ☐ 1등급 ☐ 2등급 ☐ 3등급 ☐ 4등급 ☐ 5등급 ☐ 인지지원 ☐ 등급외(A, B) ☐ 기각·각하 ☐ 등급판정 신청중			
		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(☐ 일반돌봄군 ☐ 중점돌봄군)			
		☐ 급성기·요양병원 퇴원(예정)자(☐ 의료기관 연계 ☐ 지역사회 발굴) ☐ 장애등록/정도(☐ 심한 장애 ☐ 심하지 않은 장애) ☐ 기타() ☐ 해당 없음			
		누군가의 도움 없이 실외 보행 가능여부	☐ 예 ☐ 아니오	2주일 이내 퇴원여부	☐ 예 ☐ 아니오
	장애인 (65세 미만)	장애정도	☐ 심한 장애 ☐ 심하지 않은 장애		
		장애유형	☐ 지체 ☐ 뇌병변 ☐ 시각 ☐ 청각 ☐ 언어 ☐ 지적 ☐ 자폐성 ☐ 정신 ☐ 신장 ☐ 심장 ☐ 호흡기 ☐ 간 ☐ 안면 ☐ 장루·요루 ☐ 뇌전증 * 중복시 모두 체크		
		활동지원 신청여부	☐ 예 (☐ 수급권자 ☐ 등급외자) ☐ 아니오 (☐ 미신청 ☐ 신청중 ☐ 신청예정)		
		시설퇴소 (예정)여부	☐ 예 ☐ 아니오 ☐ 해당 없음		

■ 주요 욕구(문제)

노 인	[] 기능	
	[] 인지행동	
	[] 사회행동	
	[] 간호관리	
	[] 주거환경	
장 애 인	[] 기능동작	
	[] 건강상태	
	[] 영양상태	
	[] 구강상태	
	[] 주거환경	

■ 서비스 제공목표

1순위		2순위		3순위	
-----	--	-----	--	-----	--

■ 필요서비스 내용

구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 제공주기	서비스 제공기관
보건의료 건강		[] 주 [] 월 [] 분기 [] 비정기 [] 중단 () 회	
요양		[] 주 [] 월 [] 분기 [] 비정기 [] 중단 () 회	
생활지원		[] 주 [] 월 [] 분기 [] 비정기 [] 중단 () 회	
주거복지		[] () 회	
기타 (타사업)		[] 주 [] 월 [] 분기 [] 비정기 [] 중단 () 회	
종합의견			
본인동의 및 보호자 설명	[] 실시 [] 미실시	차기 계획검토일자	년 월 일

■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

의뢰처 (지자체)	기관명					
	담당자명			연락처		
	작성일자 년 월 일			의뢰일자 년 월 일		
수신처 (서비스 제공기관)	서비스 영역 [] 보건의료건강 [] 장기요양 [] 일상생활돌봄지원 [] 가족지원 [] 기타					
	기관명			주소		
대상자 정보 및 의뢰 내용	성명			성별		
	생년월일			연락처		
	주소					
	의뢰 서비스명					
	내용	주기	횟수	방법	기간	
					~	
					~	
					~	
					~	
				~		
	기타사항					

() 시·군·구/읍·면·동 담당자명
서비스 제공기관장 귀하

– 23 –